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556
----------	-------

발의연월일 : 2025. 9. 1.

발 의 자 : 김병기 · 박지원 · 문금주
김문수 · 김현정 · 박상혁
이수진 · 박용갑 · 이정문
이기현 · 전진숙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가상자산 간의 교환 및 가상자산 이전, 보관 등과 관련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이와 같이 다수의 가상자산업 유형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정의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대부분의 과정을 가상자산사업자가 전담함에 따라 독점의 폐해, 이해상충 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고 산업 생태계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거래과정 단계별로 각각의 사업자를 분리하여 정하고 있는 주식시장 등에 준하여 가상자산사업자 개념을 세분화하는 등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됨.

참고로,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 거래 방지에 우선을 두어 제정된 현행법의 2024년 7월 시행 이후 금융위원회는 최근까지 가상자산 위원회를 4차례 개최하여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참여, 투자 목적의 매

매 허용 방안 등을 검토하는 등 법인 투자를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는 중임.

이러한 가상자산 입법 논의 진행에 맞추어 가상자산투자자문 및 가상자산투자일임의 개념을 신설하고 이를 영업으로 하는 가상자산투자자문업자와 가상자산투자일임업자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하여 가상자산투자회사 및 가상자산투자조합 등을 새로이 규정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변화하는 가상자산 분야에 부합하도록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투자자문을 가상자산 투자판단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로, 가상자산투자일임을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가상자산을 운용하는 행위로 각각 정의하고, 해당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가상자산투자자문업자와 가상자산투자일임업자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2호바목 및 사목 신설, 제2조제5호 및 제6호 신설).

나. 가상자산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가상자산투자회사를 정의하고, 가상자산투자회사 등이 가상자산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가상자산투자조합을 정의함(안 제2조제7호 및 제8호 신설).

다. 가상자산투자자문업자와 가상자산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계약(투

자일임계약)의 체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등 가상자산투자자문업자와 가상자산투자자일임업자의 영업 규칙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7까지 신설).

라. 가상자산투자회사의 등록과 결산보고, 공시 등에 대한 사항 및 가상자산투자자에 대한 행위제한, 등록의 말소 및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의8부터 제9조의19까지 신설).

마. 가상자산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재산 운용, 결산보고, 공시 등에 대한 사항 및 가상자산투자조합의 해산, 등록의 말소 및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의20부터 제9조의35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위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매도·매수(이하 “매매”라 한다)하는”을 “매매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이전 또는 보관·관리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가상자산투자”란 수익을 목적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가상자산을 매도·매수(이하 “매매”라 한다)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바. 가상자산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종류,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이하 “가상자산투자자문”이라 한다)

사.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이용자별로 구분하여 그 이용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

적 등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이하 “가상자산투자일임”이라 한다)

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이전 또는
보관·관리하는 자

나. 제5호의 가상자산투자자자문업자로부터 가상자산투자자자문 용역
을 제공받거나, 제6호의 가상자산투자일임업자로부터 가상자산
투자일임 용역을 제공받는 자

5. “가상자산투자자자문업자”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된 자
로서 제2호바목의 가상자산투자자자문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
다.

6. “가상자산투자일임업자”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된 자
로서 제2호사목의 가상자산투자일임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
다.

7. “가상자산투자회사”란 가상자산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
서 제9조의8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8. “가상자산투자조합”이란 가상자산투자회사 등이 가상자산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9조의20
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제2장의2(제9조의2부터 제9조의7)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가상자산투자자문업자 및 가상자산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9조의2(계약의 체결) ① 가상자산투자일임업자는 투자에 따른 위험
감수능력이 있는 이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자 이외의 자
와 가상자산투자일임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상자산투자자문업자 또는 가상자산투자일임업자는 이용자와
가상자산투자자문을 위한 계약(이하 이 장에서 “투자자문계약”이라
한다) 또는 가상자산투자일임을 위한 계약(이하 이 장에서 “투자일
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가상자산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가상자산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가상자산
2. 가상자산투자자문 또는 가상자산투자일임의 수행에 관하여 가상
자산투자자문업자 또는 가상자산투자일임업자가 정하고 있는 일반
적인 기준 및 절차
3. 가상자산투자자문 또는 가상자산투자일임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
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4. 이용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가상자산투자자문업자 또는
가상자산투자일임업자가 정한 기준 및 절차
5.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이용자

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이용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6.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이용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
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8. 이용자는 투자일임재산(가상자산투자일임업자가 이용자로부터 가
상자산투자일임을 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운
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9. 그 밖에 이용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판단기
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가상자산투자자문업자 또는 가상자산투자일임업자는 이용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기재된 계약서류를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
만, 계약내용 등이 이용자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항 각 호의 사항

2.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4.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할 가상자산사업자의
명칭 및 영업소명

④ 제3항의 계약서류 기재 내용은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⑤ 제3항에 따른 계약서류의 제공 사실 또는 계약체결 사실 및 그 시기에 관하여 이용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가상자산투자자문업자 및 가상자산투자일임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계약서류 제공의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가상자산투자자문업자 또는 가상자산투자일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이용자로부터 금전·가상자산,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이용자에게 금전·가상자산,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이용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가상자산,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가상자산투자자문인력 또는 가상자산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가상자산투자자문 또는 가상자산투자일임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5. 가상자산투자자문에 응하거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

문 또는 매매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가상자산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② 가상자산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운용방법의 변경 또는 계약의 해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자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수인(이하 이 장에서 “관계인수인”이라 한다)이 인수한 가상자산을 투자일임자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3.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자의 가상자산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를 형성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자산으로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행위
4. 특정 이용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투자일임자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자산과 거래하는 행위
6. 투자일임자산으로 가상자산투자일임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7. 이용자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가상자산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매매 또는 교환하는 행위
8.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이용자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이용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9. 이용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임받는 행위
 - 가.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나.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 다.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9조의4(성과보수의 제한) ① 가상자산투자자문업자 또는 가상자산투자일임업자는 가상자산투자자문과 관련한 투자결과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과 연동된 성과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다.

② 가상자산투자자문업자 또는 가상자산투자일임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성과보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성과보수의 산정방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의5(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① 가상자산투자일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서(이하 이 장에서 “투자일임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투자일임재산의 운용현황

2. 투자일임재산 중 특정 자산을 그 가상자산투자일임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거래시기·거래실적 및 잔액

② 투자일임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교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6(겸영업무의 금지 등) ① 가상자산사업자 중 가상자산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알선·대행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가상자산투자일임의 업무를 겸영할 수 없다.

② 가상자산사업자 중 가상자산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알선·대행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가상자산투자자문의 업무를 겸영할 수 없다. 다만,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및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예외로 한다.

제9조의7(가상자산투자일임업자 등의 특례) 가상자산투자일임업자와 가상자산투자자문의업자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의3(제9조의8부터 제9조의3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3 가상자산투자회사 및 가상자산투자조합

제1절 가상자산투자회사

제9조의8(가상자산투자회사의 등록) ① 가상자산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 투자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사항 중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투자회사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로서 자본금의 규모와 그 자본금에서 차지하는 차입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

2. 임원(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차목과 카목은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또는 업무집행자에게만 적용한다.

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사. 제9조의18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제9조의19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사람(같은 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에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가상자산투자회사 등록 취소를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등록말소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 제9조의19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가상자산투자회사의 임원이었던 사람(같은 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에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가상자산투자회사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면직되거나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차.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짜 이내에 채무를 갚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카. 다른 가상자산투자회사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임직원

3. 대주주가 이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상근 전문인력과 시설을 보유할 것

5. 가상자산투자회사와 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③ 대주주가 아닌 자로서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새로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된 경우 그 취득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가상자산투자회사는 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투자회사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고시로 정한다.

제9조의9(가상자산투자회사의 행위제한) ① 가상자산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상자산투자회사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상자산투자 이외의 투자행위

2.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자기가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행위. 다만, 투자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가상자산투자회사의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가상자산투자회사는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제9조의10(가상자산투자회사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① 가상자산투자회사의 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은 가상자산투자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등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상자산투자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가상자산투자회사의 투자활동 등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가상자산투자회사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4. 금리, 수수료 또는 담보 등에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해당 가상자산투자회사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대주주등 자신이나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투자회사의 대주주등이 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투자회사 또는 대주주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9조의11(가상자산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 기준) ① 가상자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 조사 결과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가상자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 이익 배당의 제한 등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의12(가상자산투자회사의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는 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제9조의15에 따른 가상자산투자회사의 공시 및 제9조의32에 따른 가상자산투자조합의 공시에 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직무 관련 정보”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가상자산투자회사(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투자회사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3. 가상자산투자회사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지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4. 가상자산투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

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으로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직무 관련 정보를 받은 자

제9조의13(가상자산투자회사의 사채 발행) 가상자산투자회사는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본금과 적립금 총액의 20배 이내의 범위에서 「상법」에 따른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9조의14(가상자산투자회사의 결산보고) 가상자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금융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15(가상자산투자회사의 공시) ① 가상자산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조직과 인력
2. 채무와 손익
3. 가상자산투자회사의 결성 및 운영 성과
4. 제9조의11제3항에 따른 경영 개선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와 제9조의19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16(영업양도 등에 따른 가상자산투자회사 권리·의무의 승계)

① 가상자산투자회사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분할·합병한 경우 그 양수인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의 가상자산투자회사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분할·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양수일 또는 분할·합병일부터 종전의 가상자산투자회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9조의17(가상자산투자회사 등록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제9조의8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
2. 제9조의18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
3. 제9조의19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제9조의18(가상자산투자회사 등록의 말소) ① 가상자산투자회사는 가

상자산투자의 사업을 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 신청을 하면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9조의19(가상자산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투자회사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8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가상자산투자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가상자산투자의 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3. 제9조의8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임원(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을 말한다)이 제9조의8제2항 제2호 각 목(차목과 카목은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또는 업무집행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가상자산투자회사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9조의9를 위반하여 행위제한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9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투자회사의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제9조의11제3항에 따른 조치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9조의15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8. 가상자산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제9조의23을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9. 제13조에 따른 감독·검사·조치·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보고·제출한 경우
 10. 제2항에 따라 요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경우
- ②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투자회사가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상자산투자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투자회사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가상자산투자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또는 해임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경고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절 가상자산투자조합

제9조의20(가상자산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외의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금융위원회에게 가상자산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사항 중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가상자산투자회사
2.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서 출자금 총액,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3. 가상자산투자조합의 결성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투자회사. 다만, 외국투자회사가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함께 가상자산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 가. 국내지점과 전문인력 등 가상자산투자회사에 준하는 물적·인적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 나. 국제적 신인도가 높고 사업계획이 타당할 것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투자조합으로 등록을 하려는 조합은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가상자산투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④ 가상자산투자조합의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출자하거나 나누어 출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가상자산투자조합은 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가상자산투자조합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투자조합의 등록 절차·방법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1(가상자산투자조합의 투자의무) 가상자산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하여야 한다.

1. 투자계약서 작성일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총액 10위 이

내의 가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2.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의 가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

제9조의22(가상자산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① 가상자산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1. 가상자산투자조합이 단독으로 100퍼센트 출자한 회사일 것
2.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한 가상자산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게 회사 재산의 운용을 위탁할 것

②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31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549조제2항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투자목적회사는 차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한도,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 산정방식과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투자목적회사 업무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제9조의23부터 제9조의25까지 및 제9조의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상자산투자조합”은 “투자목적회사”로 본다.

제9조의23(가상자산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가상자산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가상자산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상자산투자조합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가상자산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2. 자금차입,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3. 가상자산투자 이외의 투자행위
4.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제2항제4호 단서에 따라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④ 업무집행조합원은 가상자산투자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그 가상자산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의24(가상자산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등)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가상자산투자조합의 재산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가상자산투자조합 재산의 보관·관리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위탁할 것. 다만, 업무집행조합원이 가상자산사업자일 경우 자기에게 가상자산투자조합의 재산에 대한 보관·관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가상자산투자조합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을 것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투자조합 재산의 운용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가상자산투자조합 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지시를 하여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지시에 따라 그 재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의 지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제9조의25(가상자산투자조합의 결산보고) 업무집행조합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금융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6(가상자산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상자산투자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1. 업무집행조합원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지속할 수 없게 된 경우

2. 업무집행조합원이 파산한 경우

3.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9조의27(가상자산투자조합의 해산) ① 가상자산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산한다.

1. 존속기간의 만료

2.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탈퇴

3.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탈퇴

4.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지속할 수 없게 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가상자산투자조합에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9조의20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업무집행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가상자산투자조합을 계속할 수 있다.

③ 가상자산투자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 외의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가상자산투자조합 해산 당시에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으면 업무집행조합원이 연대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제9조의28(가상자산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① 제9

조의27제3항에 따른 청산인이 청산사무를 끝마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가상자산투자조합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9조의29(가상자산투자조합 재산의 보호) 가상자산투자조합 조합원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때에는 「민법」 제704조에도 불구하고 그 조합원이 가상자산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제9조의30(가상자산투자조합의 수익처분) 가상자산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의 산정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1(가상자산투자조합의 손실보전 등의 금지) ① 가상자산투자조합은 건전한 가상자산투자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상자산투자조합의 투자와 관련하여 출자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가상자산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출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는 행위
2. 출자자에게 가상자산투자조합의 투자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한 이익을 보장하고 제공하는 행위

② 가상자산투자조합의 출자자는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가상자산투자조합 또는 가상자산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32(가상자산투자조합의 공시)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

2. 그 밖에 가상자산투자조합의 운영에 관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33(가상자산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20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9조의20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9조의21을 위반하여 가상자산투자를 한 경우

4. 제9조의22를 위반하여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거나 운영한 경우
5. 제9조의23을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6. 제9조의24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을 보관·관리한 경우
7. 제9조의25를 위반하여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3조에 따른 감독·검사·조치·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보고·제출한 경우
9.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등록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10.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시정명령
3. 경고

③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상자산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또는 해임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경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34(가상자산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의 출자에 관한 특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의 가상자산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로 본다.

제9조의35(가상자산투자조합에 대한 「상법」의 준용) 가상자산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86조의4 및 제86조의9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제1항 중 “가상자산사업자가”를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투자회사 및 가상자산투자조합(이하 이 조에서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이”로, “가상자산사업자의”를 “가상자산사업자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사업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가상자산사업자에게”를 “가상자산사업자등에게”로 한다.

제1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에”를 “제5항까지에”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등이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9조의12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자
3. 제9조의23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상자산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의 재산을 사용한 자

제2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성과보수를 받은 자
3. 제9조의6에 따른 겸영업무 금지를 위반하여 겸영을 한 자

4. 제9조의8제1항 후단 또는 제9조의20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5. 제9조의14 또는 제9조의25에 따른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6. 제9조의15제1항 또는 제9조의32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7. 제9조의16제1항에 따른 영업의 양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u>1의2. “가상자산투자”란 수익을 목적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가상자산을 매도·매수(이하 “매매”라 한다)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u>
2.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가. 가상자산을 <u>매도·매수(이하 “매매”라 한다)하는 행위</u> 나. ~ 마. (생 략) <u><신 설></u>	2. ----- ----- ----- -----. 가. ----- <u>매매하는</u> ----- - 나. ~ 마. (현행과 같음) <u>바. 가상자산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종류,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u>

<신 설>

3. “이용자”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이전 또는 보관·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행위(이하 “가상자산투자자문”이라 한다)

사.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이용자별로 구분하여 그 이용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이하 “가상자산투자일임”이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이전 또는 보관·관리하는 자

나. 제5호의 가상자산투자자문업자로부터 가상자산투자자문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6호의 가상자산투자일임업자로부터 가상자산투자일임 용역을 제공받는

4.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자

4. (현행과 같음)

5. “가상자산투자자문업자”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된 자로서 제2호
바목의 가상자산투자자문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6. “가상자산투자일임업자”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된 자로서 제2호
사목의 가상자산투자일임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7. “가상자산투자회사”란 가상
자산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9조의8에 따라 등
록한 회사를 말한다.

8. “가상자산투자조합”이란 가
상자산투자회사 등이 가상자
산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
으로서 제9조의20에 따라 등
록한 조합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제2장의2 가상자산투자자문업자
및 가상자산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9조의2(계약의 체결) ① 가상자
산투자일임업자는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이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
자 이외의 자와 가상자산투자
일임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② 가상자산투자자문업자 또는
가상자산투자일임업자는 이용
자와 가상자산투자자문을 위한
계약(이하 이 장에서 “투자자
문계약”이라 한다) 또는 가상
자산투자일임을 위한 계약(이
하 이 장에서 “투자일임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이용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가상자산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가상자산투자
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가
상자산

2. 가상자산투자자문 또는 가상

자산투자일임의 수행에 관하여 가상자산투자자문업자 또는 가상자산투자일임업자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3. 가상자산투자자문 또는 가상자산투자일임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 경력

4. 이용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가상자산투자자문업자 또는 가상자산투자일임업자가 정한 기준 및 절차

5.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이용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이용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6.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이용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8. 이용자는 투자일임재산(가상자산투자일임업자가 이용자로 부터 가상자산투자일임을 받

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
구할 수 있다는 사실

9. 그 밖에 이용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가상자산투자자문업자 또는
가상자산투자일임업자는 이용
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
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
약서류를 이용자에게 지체 없
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계
약내용 등이 이용자를 해칠 우
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류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항 각 호의 사항

2.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4.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
한 사항

5.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투자일
임재산을 위탁할 가상자산사

<신 설>

업자의 명칭 및 영업소명

④ 제3항의 계약서류 기재 내용은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⑤ 제3항에 따른 계약서류의 제공 사실 또는 계약체결 사실 및 그 시기에 관하여 이용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가상자산투자자문업자 및 가상자산투자일임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계약서류 제공의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가상자산투자자문업자 또는 가상자산투자일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이용자로부터 금전·가상자

산,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
탁을 받는 행위

2. 이용자에게 금전·가상자산,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이용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
·가상자산,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
하는 행위

3. 가상자산투자자문인력 또는
가상자산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가상자산투자자문 또
는 가상자산투자일임을 수행
하게 하는 행위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5. 가상자산투자자문에 응하거
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
판단에 관한 자문 또는 매매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
하기 전에 그 가상자산을 자
기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
3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
위

② 가상자산투자일임업자는 투

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 보호 및 건
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운용방법의 변경 또는 계약의
해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자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관계인수인(이하 이 장
에서 “관계인수인”이라 한다)
이 인수한 가상자산을 투자일
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3.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업무
를 담당할 자의 가상자산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를 형성
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으
로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행위

4. 특정 이용자의 이익을 해하
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
을 도모하는 행위

5.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
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6. 투자일임재산으로 가상자산
투자일임업자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7. 이용자의 동의 없이 투자일
임재산으로 가상자산투자일임
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매매 또는
교환하는 행위
8.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이용
자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
러 이용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9. 이용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임받는 행위
 - 가. 투자일임재산을 위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지정하
거나 변경하는 행위
 - 나. 투자일임재산을 위탁하거
나 인출하는 행위

<신 설>

<신 설>

다.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
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행위

제9조의4(성과보수의 제한) ① 가
상자산투자자문업자 또는 가상
자산투자일임업자는 가상자산
투자자문과 관련한 투자결과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
과 연동된 성과보수를 받아서
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 보
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성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② 가상자산투자자문업자 또는
가상자산투자일임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성과보수를 받고
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성과보수
의 산정방식,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투자
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의5(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신 설>

① 가상자산투자일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서(이하 이 장에서 “투자일임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투자일임재산의 운용현황

2. 투자일임재산 중 특정 자산을 그 가상자산투자일임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거래시기·거래 실적 및 잔액

② 투자일임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교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6(겸영업무의 금지 등) ① 가상자산사업자 중 가상자산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알선·대행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가상자산투자일임의 업무를 겸영할 수 없다.

② 가상자산사업자 중 가상자산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알선·대행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자는 가상자산투자자문의 업무를 겸영할 수 없다. 다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및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예외로 한다.

제9조의7(가상자산투자일임업자 등의 특례) 가상자산투자일임업자와 가상자산투자자문의업자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의3 가상자산투자회사 및
가상자산투자조합

제1절 가상자산투자회사

제9조의8(가상자산투자회사의 등록) ① 가상자산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투자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사항 중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투자회사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

어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 유한회사 · 유한책임회사로서 자본금의 규모와 그 자본금에서 차지하는 차입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임원(유한회사 ·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차목과 카목은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또는 업무집행자에게만 적용한다.

가.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

간 중에 있는 사람

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사. 제9조의18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제9조의19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사람(같은 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에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

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가상자산투자회사 등록 취
소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
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
나 등록말소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 제9조의19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가상자산투
자회사의 임원이었던 사람
(같은 조에 따른 등록 취
소 사유에 직접 책임이 있
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
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가상자산
투자회사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자. 면직되거나 해임된 날부
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차.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짜 이내에 채무
를 갚지 아니한 사람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카. 다른 가상자산투자회사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임직원

3. 대주주가 이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상근 전문인력과 시설을 보유할 것

5. 가상자산투자회사와 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③ 대주주가 아닌 자로서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새로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된 경우 그 취득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가상

<신 설>

자산투자회사는 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
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투
자회사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의 절차·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고시로 정한다.

제9조의9(가상자산투자회사의 행
위제한) ① 가상자산투자회사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가상자산투자회
사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
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가상자산투자 이외의 투자행
위

2.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
나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담보
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
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3. 자기가 발행한 가상자산에

<신 설>

대한 투자행위. 다만, 투자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가상자산투자회사의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가상자산투자회사는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제9조의10(가상자산투자회사 대 주주등의 행위제한) ① 가상자산투자회사의 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대주주 등”이라 한다)은 가상자산투자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등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상자산투자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외

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상법」 제466조
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가상자산투자회사의
투자활동 등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가상자산투자회사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4. 금리, 수수료 또는 담보 등
에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비
교하여 해당 가상자산투자회
사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
로 대주주등 자신이나 제3자
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
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투자
회사의 대주주등이 제1항을 위
반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

<신 설>

<신 설>

는 경우에는 가상자산투자회사 또는 대주주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9조의11(가상자산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 기준) ① 가상자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 조사 결과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가상자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 이익 배당의 제한 등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의12(가상자산투자회사의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
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
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
업자는 제외한다)는 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정보로서 제9조의1
5에 따른 가상자산투자회사의
공시 및 제9조의32에 따른 가
상자산투자조합의 공시에 의하
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직무 관련 정보”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
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
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가상자산투자회사(그 계열회
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
서 같다)의 임직원·대리인으
로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
산투자회사의 주요주주로서

-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3. 가상자산투자회사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지
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
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
하는 과정에서 직무 관련 정
보를 알게 된 자
4. 가상자산투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
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
정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
게 된 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의 대리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
한다)·사용인, 그 밖의 종업
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
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
직원을 말한다)으로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신 설>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
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
부터 직무 관련 정보를 받은
자

<신 설>

제9조의13(가상자산투자회사의
사채 발행) 가상자산투자회사
는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본금과
적립금 총액의 20배 이내의 범
위에서 「상법」에 따른 사채
를 발행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의14(가상자산투자회사의
결산보고) 가상자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금융위원회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15(가상자산투자회사의
공시) ① 가상자산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
야 한다.

1. 조직과 인력

2. 재무와 손익

3. 가상자산투자회사의 결성 및

<신 설>

운영 성과

4. 제9조의11제3항에 따른 경영 개선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와 제9조의19제1항에 따른 업무 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16(영업양도 등에 따른 가상자산투자회사 권리·의무의 승계) ① 가상자산투자회사가 그营业을 양도하거나 분할·합병한 경우 그 양수인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의 가상자산투자회사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분할·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

<신 설>

<신 설>

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
된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분할
·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양수인 또는 분할 · 합병일부터
종전의 가상자산투자회사의 지
위를 승계한다.

제9조의17(가상자산투자회사 등
록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
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
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
재하여야 한다.

1. 제9조의8제1항에 따라 등록
을 한 경우
2. 제9조의18제2항에 따라 등록
을 말소한 경우
3. 제9조의19제1항에 따라 등록
을 취소한 경우

제9조의18(가상자산투자회사 등
록의 말소) ① 가상자산투자회
사는 가상자산투자의 사업을
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고시로

<신 설>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 신청을 하면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9조의19(가상자산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투자회사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8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가상자산투자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가상자산투자의 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3. 제9조의8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임원(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을 말한다)이 제9조의8제2항제2호 각 목(차목과 카목은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또는 업무집행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가상자산투자회사
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9조의9를 위반하여 행위제한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9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투자회사의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제9조의11제3항에 따른 조치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9조의15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8. 가상자산투자조합의 업무집

- 행조합원으로서 제9조의23을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9. 제13조에 따른 감독·검사·조치·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보고·제출한 경우
10. 제2항에 따라 요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경우
- ②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투자회사가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상자산투자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투자회사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가상자산투자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또는 해임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경고

<신 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절 가상자산투자조합

제9조의20(가상자산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외의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금융위원회에게 가상자산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사항 중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가상자산투자회사

2.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서 출자금 총액,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3. 가상자산투자조합의 결성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금융위원회

가 인정하는 외국투자회사.
다만, 외국투자회사가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와 함께 가상자산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
로 본다.

가. 국내지점과 전문인력 등
가상자산투자회사에 준하
는 물적·인적 요건을 갖
추고 있을 것

나. 국제적 신인도가 높고 사
업계획이 타당할 것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투자
조합으로 등록을 하려는 조합
은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가상자산투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
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
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④ 가상자산투자조합의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출자하거나 나누어 출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가상자산투자조합은 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가상자산투자조합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투자조합의 등록 절차·방법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제9조의21(가상자산투자조합의
투자의무) 가상자산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하여야 한다.

1. 투자계약서 작성일 기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총액
10위 이내의 가상자산에 대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2.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의 가
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비율 이하

제9조의22(가상자산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① 가상자산투
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
는 유한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목
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1. 가상자산투자조합이 단독으
로 100퍼센트 출자한 회사일
것

2.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점 외
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한 가상
자산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
원에게 회사 재산의 운용을
위탁할 것

②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
는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
용한다. 다만, 「상법」 제317
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549
조제2항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③ 투자목적회사는 차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목적회사
의 차입 한도, 투자목적회사 재
산의 투자비율 산정방식과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
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④ 투자목적회사 업무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제9조의23부
터 제9조의25까지 및 제9조의3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상자
산투자조합”은 “투자목적회사”
로 본다.

<신 설>

제9조의23(가상자산투자조합 업

무의 집행 등)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가상자산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가상자산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가상자산투자조합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가상자산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2. 자금차입,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3. 가상자산투자 이외의 투자행위
4.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설립목적을 해치는

<신 설>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행위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제2항제4
호 단서에 따라 담보권 실행으
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
분하여야 한다.

④ 업무집행조합원은 가상자산
투자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그 가상자산투
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의24(가상자산투자조합 재
산의 관리와 운용 등) ① 업무
집행조합원은 가상자산투자조
합의 재산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1. 가상자산투자조합 재산의 보
관·관리를 가상자산사업자에
게 위탁할 것. 다만, 업무집행
조합원이 가상자산사업자일
경우 자기에게 가상자산투자
조합의 재산에 대한 보관·관
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

다.

2. 가상자산투자조합 재산을 보
관·관리하는 가상자산사업자
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을 것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투자조합 재산의
운용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
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가상자
산투자조합 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지시를 하여야 하
며, 가상자산사업자는 업무집행
조합원의 지시에 따라 그 재산
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의
지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행위
로 보지 아니한다.

<신 설>

제9조의25(가상자산투자조합의
결산보고) 업무집행조합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금융위원회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의26(가상자산투자조합 업
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업무집
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신 설>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상자산투자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1. 업무집행조합원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지속할 수 없게 된 경우

2. 업무집행조합원이 파산한 경우

3.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9조의27(가상자산투자조합의 해산) ① 가상자산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산한다.

1. 존속기간의 만료

2.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탈퇴

3.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탈퇴

4.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지속할 수 없게 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신 설>

는 사유

② 가상자산투자조합에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한 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9조의20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업무집행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가상자산투자조합을 계속할 수 있다.

③ 가상자산투자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 외의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가상자산투자조합 해산 당시에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으면 업무집행조합원이 연대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제9조의28(가상자산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① 제9조의27제3항에 따른 청

<신 설>

<신 설>

산인이 청산사무를 끝마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가상자산투자조합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9조의29(가상자산투자조합 재산의 보호) 가상자산투자조합 조합원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때에는 「민법」 제704조에도 불구하고 그 조합원이 가상자산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제9조의30(가상자산투자조합의 수익처분) 가상자산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의 산정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제9조의31(가상자산투자조합의 손실보전 등의 금지) ① 가상자산투자조합은 건전한 가상자산투자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상자산투자조합의 투자와 관련하여 출자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가상자산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출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는 행위

2. 출자자에게 가상자산투자조합의 투자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고 제공하는 행위

② 가상자산투자조합의 출자자는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가상자산투자조합 또는 가상자산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32(가상자산투자조합의

<신 설>

공시)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

2. 그 밖에 가상자산투자조합의 운영에 관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33(가상자산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20제1항에 따

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9조의20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
우

3. 제9조의21을 위반하여 가상
자산투자를 한 경우

4. 제9조의22를 위반하여 투자
목적회사를 설립하거나 운영
한 경우

5. 제9조의23을 위반하여 업무
를 집행한 경우

6. 제9조의24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을 보관·관리한 경우

7. 제9조의25를 위반하여 결산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3조에 따른 감독·검사·
조치·요구를 거부·방해하거
나 기피한 경우 또는 거짓으
로 보고·제출한 경우

9.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등록
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10.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
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시정명령
3. 경고

③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가상자산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또는 해임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신 설>

<신 설>

제13조(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
검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가
상자산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
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

3. 경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34(가상자산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의 출자에 관한 특
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
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
의 가상자산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로 본다.

제9조의35(가상자산투자조합에
대한 「상법」의 준용) 가상자
산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다만, 같은 법 제86조의4
및 제86조의9는 준용하지 아니
한다.

제13조(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
검사 등) ① -----가
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투자회
사 및 가상자산투자조합(이하
이 조에서 “가상자산사업자등”

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 가상자산사
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이해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를 명할 수 있다.

1. ~ 7. (생략)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검사
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
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⑤ (생략)

제19조(벌칙) ①·② (생략)

<신설>

이라 한다)이-----

-----가상자산사업자등의-----

② -----

-----가상자산사
업자등-----

1. ~ 7. (현행과 같음)

③ -----

-----가상자산사업자등에
게-----

④·⑤ (현행과 같음)

제19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유

③・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竝科)할 수 있다. ⑥ (생략) 제22조(과태료) ① (생략) <u><신설></u>	<u>기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1. 제9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u>대주주등이 자신의 이익을 얻</u> <u>을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u>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u> <u>한 자</u> 2. 제9조의12를 위반하여 직무 <u>관련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u> <u>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u> <u>위하여 이용한 자</u> 3. 제9조의23제2항제1호를 위반 <u>하여 가상자산투자조합의 업</u> <u>무집행조합원 자신의 이익이</u> <u>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조</u> <u>합의 재산을 사용한 자</u>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 ⑥ -----제5항까지에----- ----- ----- -----.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2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u>
--	--

② <u>제1항에</u>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	<u>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1. <u>제9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u> 2. <u>제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성과보수를 받은 자</u> 3. <u>제9조의6에 따른 겸영업무 금지를 위반하여 겸영을 한 자</u> 4. <u>제9조의8제1항 후단 또는 제9조의20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u> 5. <u>제9조의14 또는 제9조의25에 따른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u> 6. <u>제9조의15제1항 또는 제9조의32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u> 7. <u>제9조의16제1항에 따른 영업의 양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u> ③ <u>제1항 및 제2항에</u>----- -----
--	--

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 · 징수한다.	----- -----
----------------------------	----------------